

채용결격사유서약서

1. 본인은 대한소방공제회의 직원으로서 당회 인사규정 제 17조에 근거한, 아래 채용 결격 사유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서약한 경우에는, 거짓된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임용이 취소됨을 서약합니다.

< 공제회 인사규정 제17조(채용결격)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전임 근무기관을 포함)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전임 근무기관을 포함)
9. 전임 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한 자
10.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4. . . .

서약자 : (서명)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귀하